

정책자료 92-03

#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과 活性化方案

金南斗 · 柳在元

1992. 3.



對外經濟政策研究院

#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과 活性化方案

金南斗·柳在元

1992. 3

對外經濟政策研究院



## 序 言

國內製造業의不振과 國際收支惡化에 직면한 우리경제의 중요한 정책과제는 技術發展과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통한 우리상품의 對外競爭力 強化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外國人直接投資 誘致는 先進技術의 習得과 産業發展을 위한 매우 중요한 手段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經常收支赤字가 지속되고 있는 한, 國際收支防禦라는 측면에서 利子償還負擔을 지는 借款導入보다는 外國人直接投資의 流入이 유리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년간 輸入自由化의 확대와 서비스시장의 開放 추세 속에서 製造業部門의 外國人直接投資 流入과 技術導入이 크게 鈍化되고 있어서, 장기적인 産業技術 發展과 國際競爭力 向上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本 報告書는 外國人直接投資의 최근 동향과 그 요인을 살펴보고, 향후 外國人直接投資의 바람직한 方向 및 이를 위한 政策課題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國內 巨視經濟安定의 바탕 위에 外國人直接投資의 制度 整備 및 營業環境 改善이 이루어진다면, 尖端産業을 중심으로 한 外國人投資의 活性化가 가능하리라 믿는다.

이 報告書는 本 研究院의 金南斗, 柳在元 박사 두 분이 담당하여 수고하였으며, 經濟企劃院과 財務部 등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도 자료수집 및 의견수렴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끝으로 本 報告書에 제시된 모든 의견은 執筆者 개인의 의견이며, 本 研究院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2년 3월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院長 金 迪 教



# 目 次

序 言	3
I. 外國人直接投資의 最近動向	7
1. 製造業投資의 減少와 서비스業投資의 增加	7
2. 勞動集約的 業種의 比重 下落과 裝置産業의 比重 上昇	8
3. 美國과 日本의 投資 急減	9
4. 合作投資의 比重 減少	9
5. 外國人直接投資의 撤收 增加	10
6. 外國技術導入의 減少	11
II.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	13
1. 國內投資環境의 惡化	13
(1) 巨視經濟의 不安定性	13
(2) 勞動費用의 上昇	13
(3) 高金利 持續	15
2. 國際投資環境의 變化	17
(1) 最近 外國人直接投資의 全般的 鈍化	17
(2) 東南亞 및 EC地域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 增大	18
3. 外國人投資制度 및 營業環境改善의 未洽	20
(1) 外國人投資 認許可上의 規制	20
(2) 技術導入 規制 및 技術保護 未洽	21
(3) 外國人投資에 대한 租稅減免의 縮小	22
(4) 外國企業의 營業活動上 制約	23

Ⅲ. 外國人直接投資政策의 國際比較	26
1. 主要 先進國	26
2. 臺灣	32
3. 싱가포르	37
Ⅳ. 外國人直接投資 活性化方案	44
1. 活性化의 必要性	44
2. 活性化方案	45
(1) 國內 巨視經濟環境의 改善	45
(2) 外國人直接投資制度의 整備	46
(3) 外國人投資企業의 營業環境 改善	47
(4) 尖端工業團地의 設置	48
(5) 弘報活動의 強化	50
〈參考文獻〉	51

## I. 外國人直接投資의 最近動向

### 1. 製造業投資의 減少와 서비스業投資의 增加

—80년대 들어 急增勢를 보이던 製造業部門의 外國人直接投資流入은 87년을 頂点으로 그후 減少하는 趨勢를 보임.

- 件數는 91년까지 4년간 減少(87년 321건 → 91년 109건)
- 金額은 87년 이후 3년간 減少(87년 7.7억달러 → 90년 5.8억달러)
- 91년중에는 ARAMCO社의 4.7억달러규모의 大規模投資를 반영하여 10억 달러 수준으로 대폭 增加

—반면 서비스부분의 投資件數는 서비스업종의 外國人投資 自由化에 따라 비교적 꾸준한 增加勢를 보이고 있음.

〈表 1〉 産業別 外國人直接投資流入(認可·申告受理 基準)

(단위 : 건, 백만달러)

	製造業		서비스業		計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87	321	772.6	36	287.0	362	1,063.3
88	272	736.2	66	535.1	342	1,282.7
89	194	727.4	141	359.4	336	1,090.3
90	136	583.4	159	218.7	296	802.5
91	109	1,069.3 <sup>1)</sup>	178	325.6	287	1,396.1
累計(62-91)	2,742	6,206.5	806	3,010.9	2,672	9,268.8

註 : 네덜란드 ARAMCO社의 쌍용정유와의 合作을 위한 投資額 470.9백만달러를 제외할 경우, 投資金額은 90년 수준보다 약간 큰 598.4백만달러임.

資料 : 재무부, 「외국인투자동향」, 각호.

## 2. 勞動集約的 業種의 比重 下落과 裝置産業의 比重 上昇

— 製造業부문중 勞動集約的 業種의 外國人投資流入이 특히 不振한 반면, 資本集約的 裝置産業은 상대적으로 활발하여 製造業全體 外國人투자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크게 上昇함.

- 化工, 石油 등의 比重은 急上昇(86년 以前 25.6% → 91년 59.2%)
- 纖維, 衣類의 比重은 1%대로 下落(9.1% → 1.2%)
- 電氣·電子의 比重도 급속히 下落(22.6% → 11.6%)
- 機械類와 金屬의 比重도 下落(27.3% → 13.4%)

— 技術集約的 業種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電氣·電子, 金屬, 機械類 등의 投資가 90년이후 매우 不振한 상황이며, 高度技術을 수반하는 투자도 점차 減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高度技術關聯 租稅減免을 받은 外國人投資의 比重은 88년 19.6%에서 91년 2.0%로 下落

〈表 2〉 製造業 業種別 外國人直接投資(금액기준) 比重 推移

(단위 : %)

	62~86	87	88	89	90	91
化工, 石油, 肥料	25.6	26.9	32.3	28.9	37.3	59.2
金屬, 機械類	27.3	30.0	16.5	35.2	28.7	13.4
電氣·電子	22.6	26.7	36.4	16.0	15.3	11.6
纖維·衣類	9.1	1.6	2.8	1.9	1.2	1.2
其 他	15.4	14.8	12.0	18.0	17.5	14.6
高度技術部門*	-	-	19.6	6.8	4.1	2.0

註 : \* 高度技術을 수반하는 外國人直接投資로서 租稅減免惠澤을 받은 투자건수의 全體投資件數에 대한 比重임.

資料 : 〈表 1〉과 동일.

### 3. 美國과 日本의 投資 急減

—91년중 大規模投資가 이루어진 네덜란드를 제외한다면 지난 2~3년간 주요 국들의 對韓直接投資는 대체로 不振하였으며 美國과 日本의 경우 投資金額이 대폭 減少하였음.

—특히 日本의 경우 90년과 91년중 投資金額이 88년의 1/3수준으로 激減하고 있으며, 전체 外國人投資中에서 차지하는 製造業의 比重에서도 日本의 경우 51.8%에 그쳐, 美國의 81.7%나 유럽국가들의 70-80%대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

〈表 3〉 國別 外國人直接投資의 推移

(단위 : 백만달러)

	美 國	日 本	유 럽	獨 逸	英 國	네덜란드
87	255.1	497.0	210.5	41.5	48.3	45.9
88	284.4	696.2	242.9	74.0	21.8	48.9
89	328.8	461.5	211.9	44.0	46.1	19.5
90	317.5	235.8	206.7	62.3	45.8	36.3
91	296.6	226.2	823.1	67.7	18.8	599.4
累 計(62-91)	2,554.9	4,018.9	2,041.7	353.3	246.3	803.2
製造業累計	2,087.0	2,081.8	--	292.8	175.3	703.0
製造業比重(%)	81.7	51.8	--	82.9	72.2	87.5

資料 : 〈表 1〉과 동일.

### 4. 合作投資의 比重 減少

—投資形態別로는 外國人の 100% 單獨投資의 비중이 대체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合作投資의 比重이 낮아지고 있음.

- 單獨投資의 비중 : 87년 18.7% → 91년 29.5%
- 合作投資의 비중 : 87년 81.3% → 91년 70.5%

— 위와 같이 合作投資의 比重이 減少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있는 外國人投資의 技術水準이 높아짐으로써, 투자 기업은 自社技術의 유출을 최대한 抑制하려는 경향이 있음.
- 外國人投資持分에 대한 制限이 緩和되고 있음.

〈表 4〉 外國人直接投資의 投資比率別 構成 推移 (금액기준)

(단위 : %)

	87	88	89	90	91
單獨投資(100%)	18.69	23.49	15.43	27.69	29.48
合作投資(99%이하)	81.31	76.51	84.57	72.31	70.52
50-99%	20.57	9.01	20.51	24.29	8.37
50%	22.53	29.40	21.96	13.97	8.82
50%미만	38.22	38.10	42.10	34.06	53.32

資料: 〈表 1〉과 동일.

## 5. 外國人直接投資의 撤收 增加

— 製造業部門 外國人投資의 新規流入不振과 함께, 87년 이후 外國人投資企業의 撤收增加 趨勢도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특히 90년의 경우 出資金回收 規模가 87년의 6배인 1억 4천만달러에 달하였으며, 그것도 電氣·電子, 機械, 化學工業, 肥料 등 주요 製造業部門에서 대

〈表 5〉 外國人直接投資 出資金 回收 推移

(단위 : 백만달러)

	87	88	89	90
製 造 業	23.0	27.3	70.5	134.3
化 工	11.0	14.0	11.3	8.5
肥 料	1.5	3.0	5.7	82.8
機 械	0	4.1	2.3	2.1
電氣·電子	5.3	3.0	30.2	33.6
運送機械	0	0	3.8	1.4
서비스業	0.7	18.8	4.2	1.0
計	23.7	46.1	75.1	136.2
回收比率*(%)	0.6	0.9	1.2	2.0

註 : \* 投資殘額(인가후의 減資, 增資 등을 가감한 殘存 投資額)에 대한 비율임.  
 資料 : 〈表 1〉과 동일.

부분 발생함.

## 6. 外國技術導入의 減少

— 技術導入件數도 89년까지의 增加勢가 90년과 91년중 減少趨勢를 보이고 있음.

— 業종별로는 化學, 金屬, 電氣·電子, 機械 등 주요 重化學工業部門의 技術導入이 큰 폭으로 減少하고 있어 선진국들의 技術保護主義 추세를 잘 나타냄.

— 租稅減免惠澤을 받은 高度技術部門의 技術導入契約이 不振함.

○ 總技術導入中 租稅免除對象 技術의 比重은 88년 39.1%에서 계속 하락하여 91년 상반기에는 12.2%로 激減

〈表 6〉

## 年度別・業種別 技術導入 推移

(단위 : 건수)

	86	87	88	89	90	91.1-10
化學 纖維	17	30	51	54	42	27
精油・化學	95	147	134	124	102	63
金 屬	21	31	26	23	21	13
電氣・電子	131	162	209	227	212	142
機 械	153	148	181	158	174	117
合 計	517	637	751	763	738	472
增加率(%)	13.9	23.2	17.9	1.6	-3.3	-20.8 <sup>1)</sup>
租稅減免對象比重(%)	--	--	39.1	27.0	24.1	12.2 <sup>2)</sup>

註 1) : 전년동기비

2) : 91년 1-6월 기준

資料 : 재무부, 「기술도입 현황」, 각호.

## Ⅱ.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

### 1. 國內投資環境의 惡化

#### (1) 巨視經濟의 不安定性

— 최근 들어 인플레이의 深化, 輸出不振과 輸入急增에 따른 經常收支의 惡化 등 韓國經濟의 장래에 대한 不確實性이 增大하고 國際的 信賴性이 減少함.

— 특히 賃金上昇과 勞使紛糾 등으로 先進國企業의 製品生産基地로서의 韓國의 魅力이 크게 減少함.

#### (2) 勞動費用의 上昇

— 80년대 후반이후 國內 賃金의 급속한 上昇은, 과거 對韓直接投資를 통하여 韓國內의 低賃 勞動力을 활용하던 外國人投資企業의 生産費用節減의 利點을 소멸시켰음.

— 1988년이후의 急速한 賃金上昇으로, 과거 대만 및 싱가포르보다 낮았던 우리나라 製造業 生産職 勞動者의 賃金水準이 이들 국가보다 오히려 높아졌음.

	時間當 賃金水準 (86년→90년)	期間中 賃金上昇率	期間中 自國通貨價值 切上率
韓 國	1.45 → 4.16달러	187%	24.7%
臺 灣	1.73 → 3.98달러	130%	42.2%
싱가폴	2.23 → 3.78달러	70%	20.1%

— 그러나 우리나라 製造業 勞動者의 生産性은 아직도 대만이나 싱가포르보다 크게 낮아 우리상품의 國際競爭力 弱化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製造業 就業者 1人當 年間 附加價值生産

(90년 製造業 經常GDP / 製造業 就業者數)

- 韓 國 : 14,430달러
- 臺 灣 : 20,350달러
- 싱 가 폴 : 28,580달러

— 賃金水準과 勞動生産性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單位勞動費用(자국통화 표시)의 경우, 88년 이후 우리나라는 연평균 약 9%씩 상승하였으나, 같은 기간중 臺灣과 日本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거나 오히려 下落하였음.

〈表 7〉 主要競爭國 製造業部門의 賃金水準 및 勞動生産性 推移

	86	87	88	89	90
〈時間當賃金, 經常基準, 달러〉					
韓 國	1.45	1.78	2.50	3.57	4.16
臺 灣	1.73	2.26	2.82	3.53	3.98
싱가폴	2.23	2.31	2.67	3.15	3.78
日 本	9.31	10.83	12.80	12.63	12.83
〈就業者 1人當附加價值, 經常基準, 천달러〉					
韓 國	8.77	9.61	12.19	13.74	14.43
臺 灣	11.46	14.22	16.52	18.65	20.35
싱가폴	16.12	18.00	22.73	25.06	28.58
日 本	45.69	57.12	63.73	55.88	...

資料 : ADB, *Key Indicators of Developing Member Countries*, 각호.

US Department of Labor,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Hourly Compensation Costs for Production Workers in Manufacturing*, May 1991.

日本 總務廳統計局, 「日本統計年鑑」, 1991.

〈表 8〉 主要 競爭國의 製造業 勞動費用上昇率 推移

(단위 : %)

	86	87	88	89	90
〈名目賃金〉					
韓國	9.2	11.6	19.6	25.1	20.2
臺灣	10.1	9.9	10.9	14.6	13.5
日本	1.5	1.7	4.5	5.8	5.3
〈勞動生産性〉					
韓國	17.9	12.0	12.7	6.6	14.3
臺灣	7.1	7.9	7.4	10.5	8.1
日本	1.8	5.8	11.5	6.2	4.2
〈單位勞動費用(자국통화표시)〉					
韓國	-7.4	-0.4	6.1	17.4	5.1
臺灣	2.8	1.8	3.2	3.7	5.0
日本	-0.3	-3.9	-6.3	-0.4	1.0
〈對美달러價値 切上率〉					
韓國	-1.3	7.2	12.5	8.9	-5.0
臺灣	5.0	19.1	11.4	9.4	-2.0
日本	67.0	16.5	12.9	-10.8	-1.2
〈單位勞動費用(달러표시)〉					
韓國	-8.6	6.7	19.3	27.8	-0.3
臺灣	8.2	21.0	15.0	13.4	2.9
日本	41.1	12.0	5.8	-11.2	-0.2

註 :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산출량을 상용종업원수로 나눈 수치임.

資料 : 한국노동연구원, 「1992년도 임금관련통계자료집」.

### (3) 高金利의 持續

-1991년 이후 世界的인 低金利현상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金利는 高水準을 지속하고 있어 臺灣, 싱가포르 등 主要競爭國보다 높음.

- 市中의 資金事情을 잘 반영하는 會社債 收益率의 경우, 87년에는 12.8%로서 유로달러金利보다 5.4%포인트 정도 높았으나, 91년말에는 유로달러金利보다 14.8%포인트나 높은 18.9%였음.
- 92년들어 정부의 市中金利引下 誘導 등에 따라 會社債收益率이 17%대로 下落하고 있으나 유로달러金利 등 國際金利보다 매우 높은 수준임.

—특히 國內의 外國企業들은 國內金融機關 및 外國銀行 國內支店으로부터 營業資金을 調達하기 어려움.

- 금융관행상 필요한 擔保用 不動産의 不足
- 국내 外國銀行들의 元貨貸出資金의 不足

〈表 9〉 主要競爭國의 優良貸出金利\* 推移

(단위 : 年利 %)

	87	88	89	90	91
韓 國	10.00	11.00	10.00	10.00	10.00
(會社債收益率)	12.80	14.50	15.20	16.40	18.90
臺 灣	6.25	6.75	10.50	10.00	8.50
싱가폴	6.10	6.13	6.25	7.73	7.85
日 本	3.38	3.38	5.75	8.25	6.63
美 國	8.75	10.50	10.50	10.00	6.50
(유로달러金利)	7.44	9.38	8.38	7.56	4.13

註 : \* 연말기준임.

資料 : 한국은행, 「主要國의 經濟指標」, 각호.

## 2. 國際投資環境의 變化

### (1) 最近 外國人直接投資의 全般的 鈍化

—1990년중 걸프事態의 발발과 世界經濟의 成長鈍化 추세에 따라, 세계 전체의 外國人直接投資規模는 減少하였음.

○1989년중 1,920억달러 → 1990년중 1,790억달러

〈表 10〉 主要 地域別 外國人直接投資의 流入<sup>1)</sup> 推移

(단위 : 백만달러)

	86	87	88	89	90
E C	20,416	36,497	51,760	76,539	88,669
北 美	36,457	64,134	63,842	77,489	45,681
미 국	34,080	58,140	59,420	70,560	37,190
캐나다	1,217	4,198	3,787	4,281	5,943
멕시코	1,160	1,796	635	2,648	2,548
ASEAN <sup>2)</sup>	1,137	1,467	3,336	4,690	6,772
인도네시아	258	385	576	682	964
말레이시아	489	423	719	1,668	2,902
필리핀	127	307	936	563	530
태 국	263	352	1,105	1,777	2,376
中 國	1,875	2,314	3,194	3,393	3,489
ANIEs <sup>3)</sup>	2,915	4,856	5,701	7,388	7,824
한 국	435	601	871	758	715
대 만	770	1,419	1,183	2,418	2,301
싱가폴	1,710	2,836	3,647	4,212	4,808
世 界 全 體	75,738	121,795	149,779	192,446	179,558

註 : 1) 國際收支 기준임. 단 대만은 許可基準임.

2)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의 합계.

3) 한국, 대만, 싱가포르의 합계.

資料 : 臺灣經濟部 投資審議委員會, 「中華民國 華僑及 外國人投資, 技術合作, 對外投資 對外技術合作 統計月報」, 각호.

- 특히 全體 外國人直接投資流入의 약 40%를 차지하던 미국의 경우, 經濟不況 및 不動産市場의 극심한 沈滯로 直接投資流入이 90년중 전년의 약 절반수준으로 激減함(89년 706억달러 → 90년 372억달러).

## (2) 東南亞 및 EC地域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 增大

-90년이후 世界全體의 外國人直接投資의 減少에도 불구하고, 아세안과 中國 등 東南亞地域 및 EC地域으로의 外國人直接投資는 80년대중반 이후의 꾸준한 增加勢를 유지하고 있음.

- EC의 92년 域內市場統合 推進 등에 대비하여 對EC 直接投資가 急増함.

〈表 11〉

日本の 對아시아 直接投資 推移

(단위 : 백만달러, %)

	86	87	88	89	90
ANIEs	1,531 (65.8)	2,580 (53.0)	3,264 (58.6)	4,900 (59.5)	3,355 (47.6)
한  국	436	647	483	606	284
대  만	291	367	372	494	446
홍  콩	502	1,072	1,662	1,898	1,785
싱가포르	302	494	747	1,902	840
ASEAN	553 (23.8)	1,030 (22.0)	1,966 (35.3)	2,782 (33.8)	3,242 (46.0)
인도네시아	250	545	586	631	1,105
말레이시아	158	163	387	673	725
필  리  핀	21	72	134	202	258
태  국	124	250	859	1,276	1,154
아시아 전체	2,327 (100)	4,868 (100)	5,569 (100)	8,238 (100)	7,054 (100)

註 : ( )내는 對아시아 투자액중 해당지역에 대한 투자액의 비중(%)임.

資料 : 日本 大藏省, 「大藏省 國際金融局年報」, 1991.

- 그동안 韓國 등 ANIEs를 主要生産基地로서 활용하였던 先進國企業들이, 最近 들어 泰國,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국가들과 중국으로 投資를 轉換하고 있음.
- 특히 日本의 아시아지역에 대한 直接投資가 ANIEs보다는 ASEAN으로 급속히 移轉됨. 電氣·電子, 化學製品, 纖維衣類 등 勞動集約的 業種의 경우 日本企業의 對인도네시아 및 태국 投資가 急増함.

—臺灣의 경우 外國人直接投資는 1990년 다소 減少하였으나, 投資規模는 우리 나라의 약 3배에 달하는 23억달러를 상회하고 있음.

- 産業別로는 製造業의 비중이 다소 하락하여 62.8%를 점하였으며, 서비스 의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表 12〉 臺灣 外國人直接投資의 業種別 構成

(단위 : %)

	86	87	88	89	90
製造業	75.8	69.4	62.8	67.3	62.8
纖維·衣類·신발	1.1	1.5	2.5	2.4	0.2
化學	18.2	12.1	8.8	21.5	22.1
金屬	5.9	8.5	5.8	7.3	8.1
機械	14.4	5.4	11.6	4.3	5.6
電氣·電子	30.1	26.6	20.1	16.2	16.4
서비스業	24.1	29.7	36.5	32.7	37.2
貿易	0.6	2.9	9.3	9.2	1.2
金融·保險	10.4	1.1	4.4	6.2	13.7
運輸	6.1	3.0	5.4	2.7	1.7
1차산업	0.1	0.9	0.7	--	--
合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金額, 百萬달러)	(770.4)	(1,418.8)	(1,182.5)	(2,418.3)	(2,301.8)

資料：臺灣經濟部 投資審議委員會, 「中華民國 華僑及 外國人投資, 技術合作, 對外投資, 對外技術合作 統計月報」, 각호.

- 製造業중에서는 電氣·電子의 비중이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化學, 金屬 등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가 활발히 流入되고 있음.

### 3. 外國人投資制度 및 營業環境改善의 未洽

#### (1) 外國人投資 認許可上の 規制

— 형식적으로는 대부분의 製造業種의 外國人直接投資가 自由化(97.7%)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각종 개별법상의 認可條件과 投資持分制限이 있음.

〈表 13〉 우리나라 外國人投資 自由化 現況 (92년 1월)  
(단위:업종수(KSIC 5단위), %)

	製造業	서비스業	1次産業	計
禁止業種	6	32	13	51
制限業種	6	125	24	155
自由業種	510	254	29	793
(自由化率, %)	(97.7)	(61.8)	(43.9)	(79.4)
合計	522	411	66	999

資料: 재무부, 「외자도입관련 규정집」, 1991. 3. 1.

- 中小企業固有業種(160개 제조업종과 1개 서비스업종)의 경우와, 指定系列化業種(44개 계열의 60개업종)의 該當品目에 대한 外國人投資는 財務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함.
- 石油事業法 등 7개 個別法律에 의하여 石油精製業 등 45개업종(제조업종은 4개)이 外國人持分率 制限을 받고 있음.

〈表 14〉 持分制限 關聯 個別法 現況 (92년 1월)

業 種	關係 法律	制限 內容
沿岸漁業 등 12개 (3개 제조업종 포함)	水産業法	외국인지분 50%이상인 법인에 대한 水産業의 免許 또는 許可時 國會 同意 필요
無煙炭鑛業 등 21개	鑛業法	외국인지분 50%이상인 법인은 國會의 事前同意를 받아 鑛業權 취득
石油精製業	石油事業法	외국인투자 비율 50%超過 不可
電信電話業	電波管理法	내국인이 대표자이거나 任員 또는 議決權의 50%를 초과 의무
船舶賃貸業, 航空運送業 등 8개	海運業法 航空法	내국인투자비율 및 법인任員의 내국인比率이 1/2을 초과하고, 法人代表者는 內國人일 것
라디오放送業, 텔레비전放送業 등 2개	有線放送管理法	외국인이 代表者이거나 議決權을 소유하는 法人이 아닐 것

資料 : 〈表 13〉과 동일.

—許可規程이 복잡하고 透明性이 부족하여, 自由化業種의 경우에도 投資許可가 遲延 또는 不許되는 사례가 있음.

- 和蘭 Makro社의 中間都賣商 또는 小賣商을 상대로 한 流通業投資(한양유통과의 합작)는 결국 許可되었으나, 許可時까지 약 6개월 이상의 기간 소요
- 佛 Merlin Gerin社의 변압기 등 중전기기 판매업 許可申請은 국내업계의 異意 제기와 주무부처의 반대로 許可가 지연

(2) 技術導入 規制 및 技術保護 未洽

—技術導入에 대하여 91년 3월부터 申告制를 施行하고 있으나, 신고수리시 商業的 契約條件에 대한 소관부처의 干涉이 잔존함.

- 尖端技術을 도입하는 국내 大企業의 경우, 이미 상당한 專門性과 交渉力을 가지고 있으므로, 로얄티規模와 라이선스期間 등 商業的 條件에 관한 정부의 개입은 민간기업의 效率的인 技術導入을 制約할 가능성이 큼.

—한편 외국기업들은 國內進出時, 自社의 技術流出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 의구심에 더하여, 技術導入審査를 위하여 정부에 제출된 資料가 漏出될 것에 대한 不安感을 가지고 있음.

- 외국기업들은 租稅減免을 위한 尖端技術 立證書類로서 제출되는 각종 資料들이 정부의 여러 部處와 關聯研究機關에서 검토되고 있어 그 유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음.
- 營業秘密의 保護 등에 대한 국내의 制度施行이 외국수준에 미흡하고, 技術保護에 관한 法執行 過程에서도 한국민의 애국심 때문에 편파적인 制度運用이 이루어진다고 인식함.

### (3) 外國人投資에 대한 租稅減免의 縮小

—外國人直接投資에 대한 租稅減免 對象과 減免幅이 縮小되어 왔음.

—종전의 業種別 8년간의 租稅減免支援이 1984년 이후에는 機能別 支援으로 지원방식이 변경되고 支援期間이 縮小됨.

- 支援對象 : 高度技術 隋伴事業, 輸出自由地域 入住業體, 中小企業, 在外國民 投資事業, 大規模資本 隋伴事業 등
- 減免幅 : 法人稅, 所得稅, 財産稅, 取得稅 免除
- 支援期間 : 投資 후 10년간중 5년

—1991년 3월 이후에는 租稅減免 對象과 減免幅이 더욱 縮小됨.

- 支援對象 : 高度技術 隋伴事業, 輸出自由地域 入住業體
- 租稅減免幅
  - 法人稅·所得稅 : 3년간 100%, 2년간 50%
  - 配當所得稅 : 5년간 50%
  - 財産稅·取得稅·綜合土地稅 : 50%
  - 關稅·特別消費稅·附加價値稅 : 50%
- 法人稅와 所得稅의 면제는 「租稅減免規制法 施行令」에서 규정한 首都圈 以外의 지역에 工場施設을 新設 또는 增設하는 경우에 한정
- 財産稅, 取得稅, 綜合土地稅의 減免은 「産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지정된 工業團地와 「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 法律」에 의해 지정된 유치지역에 工場施設을 新設·增設하는 경우에 한정

#### (4) 外國企業의 營業活動上 制約

— 國內에 이미 진출한 外國企業들은 營業資金의 調達과 工場敷地의 確保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① 營業資金 確保上の 問題

— 外國으로부터의 營業資金 導入에 대하여 각종 制約을 가하고 있음.

- 商業借款導入 不許
- 株主로부터의 借入(Shareholder loan) 不許
- 優先償還株의 발행 불허, 減資의 원칙적 불허

— 韓國내 外國銀行의 元貨資金 調達上的 制約으로, 이들 外國銀行으로부터의 資金借入에 큰 隘路가 있음.

- 韓國銀行이 제공하는 SWAP(환매조건부 외환거래)의 한도가 86년 이후 89년까지 매년 10%씩 縮小되었음(86년말 잔액 1조 6,300억원 → 90년 6월말 잔액 9,400억원).
- 外國銀行이 발행하는 CD(양도성 예금증서)의 한도가 自己資本(갑기금)의 200%로 제한되어 외국은행의 元貨資金 需要規模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輸出業者의 경우 延支給 輸出이 허용되나, 輸入業者(외국투자업체 포함)에 대한 延支給 輸入은 엄격히 制限함.

- 우리나라의 경우 延支給輸入 金融制度가 적용되는 물품(관세율 10% 이하 품목) 및 기간(60일~90일)이 國際商慣例에 비추어 制限되어 있음.
- 主要 先進國의 경우 品目에 대한 規制는 없으며 期間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경우가 있음.
- 日本의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先給하거나 後給하는 방식으로 輸入代金을 지급할 때에는 通産省의 事前承認을 받아야 함.
- 臺灣의 경우 품목에 대한 規制는 없으며, 期間이 365일을 초과하는 延支給決濟의 경우 中央은행의 事前許可를 받도록 要求하고 있음.

—국내 금융관행상 담보용 부동산이 없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國內金融機關에의 接近이 매우 어려움(내무부의 外國人不動産 取得制限 政策).

## ② 工場敷地難과 非製造業 尖端産業에 대한 不動産 取得規制

—尖端産業의 경우 首都圈에 위치해야 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首都圈整備計画法」 등에 따라 신규 외국인투자기업은 首都圈內의 工場敷地確保가 困難함.

- 新設工團에 入住을 원하는 外國기업의 경우 投資認可後에만 入住申請이 가능하고, 工團造成期間 등을 감안할 때 신청후 入住까지에는 통상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新規 外國人投資企業의 工團施設 利用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國內 不動產價格 上昇과 工場敷地 確保難으로 外國기업들이 韓國內에 製造業投資를 취소하고 貿易業投資로 轉換한 사례도 발생함.
  - Goodyear社(타이어製造業)는 무역업에만 對韓投資
  - Seagate社(自動資料處理裝備製造業)는 貿易業에만 투자하고 工場은 싱가포르에 新設
  
- 또한 外國기업의 不動產買入은 製造業에만 許容되므로, 非製造業部門의 尖端産業施設을 위한 敷地確保가 어려움.
  - 研究所 및 試驗實習施設 등은 非製造業으로 분류되지만, 尖端製造業에 미치는 聯關效果가 지대함.

### Ⅲ. 外國人直接投資政策의 國際比較

#### 1. 主要 先進國

##### (1) 認許可上의 規制

— OECD의 資本移動自由化規約에서는 非居住者의 國內直接投資 및 清算의 自由化를 회원國의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完全所有 企業, 子會社 또는 支社의 設立 및 擴張
- 既存所有權의 完全取得
- 新設 또는 既存企業에의 資本參與
- 5년이상의 長期 貸付

— 1984년에는 會社設立權에 대한 保障을 追加함으로써 外國인에 대한 同等待遇(Equivalent Treatment)義務를 강화함.

— 그러나 先進國의 경우에도 國家經濟에 중요한 業種, 公共獨占 및 民間 獨점 業種에 대한 外國인 투자의 제한과 外國人 持分의 제한이 있음.

##### ① 業種制限

— OECD 會員國의 경우 대부분 製造業분야의 外國인직접투자는 自由化되어 있으나, 서비스업종 및 1次산업에는 外國인투자가 금지 또한 제한된 業종이 다수 존재함(〈表 15〉 참조).

- 金融, 放送, 通信, 交通 등 서비스업종

〈表 15〉 外國人直接投資에 대한 制限이 存在하는 主要業種

	美 國	日 本	獨 逸	프랑스	英 國	이태리	캐나다	스위스
銀行業	I	I	I	RI	I	RI	RI	RI
保險業	-	-	-	R	-	RI	-	-
放送業	MR	I	-	MR	MR	MR	R	M
郵便通信業	MR	MI	M	M	M	M	M	M
陸上運送業	R	-	M	MRI	M	M	-	M
航空運送業	R	I	MRI	MR	R	R	R	MI
海上運送業	R	I	R	R	R	R	-	MI
漁 業	R	R	-	-	-	-	-	-
鑛 業	R	R	-	MR	-	I	R	-
石 油	R	R	-	MR	-	R	R	M
農 業	-	R	-	RI	-	-	-	-
林 業	-	R	-	-	-	-	-	-
核産業	R	-	-	MRI	-	M	-	I
水力發展	R	-	-	RI	-	M	M	I
電氣·水道·개스	-	-	-	M	M	M	-	I
旅行業	-	-	-	RI	-	-	-	-
法律서비스	-	-	-	R	-	-	-	-
教 育	-	-	-	R	-	-	-	-
알콜무역·流通業	-	-	-	-	-	-	R	M
담 배	-	M	-	M	-	-	-	-

註 : R :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에 위배되는 제한

I : 기타제한

M : 공공 및 민간독점에 따른 제한

資料 : OECD, *Controls and Impediments Affecting Inward Direct Investment in OECD Member Countries, 1987.*

○ 광물 등 천연자원 개발, 漁業, 農林業 등 1차 산업 및 에너지關聯業種

- 전기, 수도, 개스 등 공공서비스업이나 담배, 소금 등 일부 독점화되어 있는

製造業 등에 있어서는 사실상 投資가 不可能한 경우가 많음.

## ② 相互主義의 認定

-1986년 OECD 資本移動自由化規約은 直接投資 및 會社設立權 保障에 대한 相互主義를 허용함으로써, 自國企業에 대하여 상대방 국가가 上記 自由化 義務를 保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該當國家의 企業에 대해서는 자유화를 留保할 수 있음.

○相互主義의 주요 적용대상은 銀行業 및 金融서비스, 保險業 등임.

## ③ 外國人 持分率 制限

-많은 선진국들도 銀行 및 金融業, 保險業, 海上運送業, 航空運輸業 및 鑛業 등의 경우 外國人의 投資持分에 제한을 두고 있음(<表 16> 참조).

## (2) 內國民待遇

-1976년 國際投資 및 多國籍企業에 대한 OECD 宣言은, 外國人企業에 대하여 法, 規定 및 行政慣行의 적용시 동일한 상황에서 국내기업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會員國間 內國民待遇(National Treatment)의 保障을 천명하고 있으며, 非會員國에 대해서도 그 適用을 勸告하고 있음.

-OECD 會員國은 내국민 대우의 예외조치를 취할 경우 그 내용을, 公共補助金, 租稅義務, 國內銀行與信과 資本市場參與, 政府購買와 公共契約, 既存 外國人支配企業에 의한 投資 등 분야별로 보고해야 함.

〈表 16〉 主要國의 外國人直接投資 持分制限

國 家	業種 및 持分制限 內容
미 국	위성통신 : 외국인지분이 총 20% 초과 불가 방송,통신 : 방송업 및 公衆通信業(common carrier)허가를 받은 회사의 외국인 지분은 20%초과 불가, 上記 會社를 통제하는 회사의 외국인 지분은 25% 초과 불가
프 랑 스	항공운송 : 내국인지분이 50%이상이고 대표자 혹은 경영자는 내국인이어야 함. 해상운송 : 해당선박의 내국인 지분이 50%이상이거나 프랑스에 主事務所를 가진 회사가 그 선박을 소유할 경우에만, 프랑스에 등록 가능 출 판 : 외국인지분이 50%이상인 법인체는 월 1회이상 정치 및 일반 정보물을 발간하는 출판회사의 자본모집에 직접참여 불가
영 국	항공운송 : 항공회사의 외국인지분은 15%초과 불가
이 태 리	해상운송 : 이태리 선박의 외국인지분 참여는 50%이내만 허용 항공운송 : 항공기 소유법인은 내국인지분이 2/3이상이고, 이사회 2/3이상과 회장 및 총지배인이 내국인이어야 함.
캐 나 다	은행 : 은행과 신탁대부회사의 외국인 지분은 총 25%, 개인 10%를 초과할 수 없음. 보험 : 생명보험회사의 외국인지분은 총25% 개인10% 초과 불가 방송 : 방송회사지분의 80%이상은 내국인이 소유해야 함. 석유·가스 : 50%이상은 캐나다인 지분이어야 함. 광 산 : 북서부지방에서의 광물 채굴권은 내국인지분이 50%이상이거나 캐나다 주식거래소에 등록된 내국기업에만 부여됨. 우라늄 생산은 내국인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에만 허용 항공운송 : 상업용항공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20%이내로 제한
스 위 스	석유·가스 : 채굴권은 내국인지분이 3/4이상인 석유채굴회사에만 허용

資料 : 〈表 15〉와 동일.

### ① 公共補助金の 受惠 排除

— 국가재정지출에 의한 공공보조금은 투명성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일부국가들은 명시적으로 특정분야에 대한 補助金支援時 외국기업을 배제하고 있음.

- 석 유 : 캐나다(탐사나 생산), 오스트리아(가격이나 공급)
- 관 광 업 : 핀란드, 아이스랜드, 뉴질랜드, 스페인, 오스트리아, 터키
- 영화제작 : 그리스, 이태리, 스위스
- 광 업 : 뉴질랜드

### ② 國內金融市場에서의 資本調達 制限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내금융시장에서의 자본조달시 내국민대우를 취하고 있는 경우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24개 OECD 회원국중 절반에도 못미침(<表 17> 참조).

- 外國人投資企業의 株式 및 債券發行 制限 및 禁止
- 長短期 銀行融資의 事前承認 또는 禁止

### ③ 既存 外國人支配企業에 의한 投資 制限

— 既存 外國人支配企業의 경우 投資制限은 모든 회원국의 경우에 신규투자자와 마찬가지로 制限措置가 취해지고 있음.

- 프랑스와 노르웨이는 투자업종에 관계없이 투자확대시 사전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 이밖에도 대부분 국가들은 投資擴大, 企業引受, 不動産取得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음.

〈表 17〉 外國人投資企業의 國內金融市場 接近制限

국 가	內國民待遇 與否 및 制限內容
호 주	내국민 대우
오스트리아	주식·채권발행 및 단기대부의 사안별승인 장기대부는 생산적 투자에 한하여 중앙은행이 인가
벨 기 에	주식발행에 대한 내국민 대우 외국기업의 채권발행시 사전승인 필요
캐 나 다	내국민 대우
덴 마 크	외국기업의 주식·채권 발행 제한 대부시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필요 (대규모 용자에 대하여 제한적)
핀 랜 드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필요 신규투자시 투자자금의 해외조달 필요
프 랑 스	투자자금의 조달은 외국환의 매매나 외국환구조로부터의 인출에 한함.(외국환관리법 적용)
독 일	내국민 대우
그 리 이스	내국민 대우 (외국인기업이 등록되었을 경우에 한함)
아 일 랜 드	EC 회원국이 아닌 경우 고정자산투자자금은 해외로부터 조달되어야 하 며, 운영자금은 국내금융시장에서 조달 가능. EC 회원국에 대해서는 내국민 대우
이 태 리	외국기업의 주식·채권발행 및 장기대부는 외국환관리법의 적용대상 단기대부는 무역부의 사전승인 필요.
일 본	내국민 대우
룩셈부르크	내국민 대우
네 텔 란 드	내국민 대우 (주식·채권발행 및 장기대부는 중앙은행 보고 또는 감독)
뉴 질 란 드	내국민 대우
노 르 웨 이	사전승인 필요
포 르 투 갈	내국민 대우
스 페 인	원칙적으로 사전승인 필요. 실제로는 시장접근에 있어 내국민 대우 허용
스 위 스	1년미만의 단기대부를 제외하고는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필요
터 키	국내은행은 외국기업에 일정한도내에서 중장기외국환 대부가능
영 국	내국민 대우
미 국	내국민 대우

資料 : 〈表 15〉와 동일.

### (3) 投資인센티브

- OECD 회원국은 一般的으로 外國人投資誘致를 위한 特別한 인센티브를 제공치 않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투자인센티브는 中立的이라고 할 수 있음.
- 1980년대 先進國들은 투자인센티브를 점차 縮小하는 동시에 外國人投資에 대한 制約 및 義務를 除去함으로써 外國人投資를 促進하려는 추세를 보임.
  - 1970년대 産業構造調整을 위한 政府의 干涉增大추세가 1980년대에는 財政上的 制約 및 經濟的 副作用 등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 캐나다, 포르투갈, 스페인은 최근 輸出義務 및 現地部品使用義務를 폐지함.
- 投資인센티브의 形態에 있어서도, 선진국들은 종전의 特定産業에 대한 支援보다는 全般的 投資環境改善, 共同研究開發을 위한 租稅支援強化 및 尖端技術産業分野를 중심으로 한 創業支援強化 등 機能別 支援으로 전환하여 가고 있음.

## 2. 臺灣

### (1) 認許可上の 規制

- 外國人投資는 外國人 및 華僑投資條例의 적용을 받으며, 經濟部 投資審議委員會의 事前承認을 받아야 함.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海外送金이나 減資時 제한은 없으나, 經濟部의 승인을 받아야 함.

1988년 외국인투자업종에 대한 네거티브 시스템이 채택되어 자유화폭이 확대됨.

外國人投資 禁止業種으로는 국가독점사업, 공공시설, 석유정제 등 전략산업, 일부 농축산업 및 서비스업 등이 존재함.

- 공공안전,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사업, 공해산업, 법률에 의한 독점사업(술, 담배 등 전매사업) 및 별도 지정사업
- 체신업, 전신업, 방송업, 유흥업
- 정부서비스 및 비영리사업
- 발전, 기체연료, 수도사업, 석유정제
- 군수용 화학품·금속·비금속제품, 군수용 토목공사
- 유독성농약·화약제품 제조
- 곡물, 채소, 과일, 화훼류, 사탕수수, 기타 작물재배업
- 유·육우, 돼지, 닭, 오리, 기타 가축 및 가금류 사육
- 조림업
- 양식업
- 가옥건축업, 토지매매업, 임대업, 중개업

外國人投資가 주관기관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制限業種은 다음과 같음.

- 채광, 채석, 채사, 채토업
- 사료, 화학비료, 피혁, 의약제조
- 항공업, 여행사, 선박대리, 운수청부, 선박임대, 창고업
- 은행, 신탁투자, 증권사 금융업, 보험경영 및 대리중개, 회계사무
- 신문, 출판업, 전문자격을 필요로 하는 의료사업

- 外國人에 대한 投資持分制限은 국영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음.
- 國內企業의 引受는 新規投資와 마찬가지로 經濟部의 사전승인을 요함.

## (2) 內國民待遇

- 원칙적으로 臺灣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내국인기업에 준하는 대우와 법적 보호를 보장함.
- 그러나, 輸出 및 國內部品使用 義務賦課 등 投資移行條件(performance requirement)이 잔존함.
  - 자동차산업의 경우 국내부품사용의무 적용: 31%(10톤이상), 37%(3.5~10톤), 50% (3.5톤 이하)
- 반면에,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하여 국내기업에게 적용되는 義務 一部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도 있음.
  - 외국인투자의 지분이 45%이상인 경우, 민간 및 고용인에게 주식배당의무 면제

## (3) 投資인센티브

- 臺灣의 投資 인센티브체계는 R&D 투자, 환경보호 및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추가적 인센티브는 거의 없음.
  - 외국인 경영자나 기술자의 거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 면제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주식배당금 및 잉여금에 대하여 20%까지 소득세 면제

-1990년 12월에 제정된 「産業高度化 促進條例」(그 이전의 投資促進法 대체)는 내국인 및 외국인투자에 공통적으로 생산설비 및 기술의 자동화, 공해방지용 설비 및 기술구입,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투자 촉진을 위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함.

( i ) 加速減價償却

- 연구개발, 실험, 품질검사용의 정밀기계·설비, 대체에너지 또는 에너지 절약용기계·설비는 2년 이내 가속감가상각 허용
- 산업구조조정, 경영규모 및 생산방법 개선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특정산업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규정된 耐用年數의 ½로 단축 가능

( ii ) 法人稅 減免

- 생산설비 및 기술의 자동화, 공해방지용 설비 및 기술구입,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에 투자하거나 상표의 국제화를 위하여 지출할 경우, 투자액의 5~20% 범위에서 소득세 감면
- 산업구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자원이 부족하거나 발전이 늦은 지역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20% 범위에서 해당연도의 소득세 감면
- 중요한 과학기술사업, 투자산업, 창업투자사업의 설립·확장을 위한 주식 발행 및 모집에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경우, 주식발행가액의 20% 내에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면제

( iii ) 綜合所得稅 減免

- 내국인 특허권이나 저작권 획득후 이로 인한 사용료 또는 판매료로 받은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에서 제외

- R&D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5-20%내의 稅額控除 이외에도 과거 5년간  
간중 최대액수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20% 세액공제를 허용함.

- 특정 尖端産業投資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및 이월, 납입자본금의 2배까지  
사내이윤유보 허용, R&D 투자에 대한 기금출연, 정부의 기업지분참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 尖端技術産業이나 技術開發投資에 대하여서는 戰略産業基金을 활용하여 시  
중금리보다 2%정도 低利의 融資를 제공함.

( i ) 國產機械購入

( ii ) 新機械購入(一般機械, 자동차부품, 전기기계, 전자기기, 정보기기)

( iii ) 自動化機械購入

- 技術移轉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우하우 및 特許權을 持分으로 간주함(25%  
상한). 특정 특허권 제공으로 인한 로열티 송금시 원천징수를 면제할 수 있  
음.

- 在外臺灣出身 科學者의 유치노력은 이들이 추후 성공적인 중소기업가로 변  
신하는 경우가 많아 자연적으로 尖端産業분야의 技術移轉 효과를 가져옴.

#### (4) 尖端工業團地 運用

- 尖端産業의 유치를 위하여 臺灣政府는 1980년 新竹尖端工業團地(Hsin Chu Science-  
based Industry Park)를 건설함. 1991년 3월 현재 수용한계에 근접한 102개

정도의 기업이 활동중이며, 電氣·電子産業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컴퓨터 (31), 반도체 (26), 통신 (19), 정밀기계 (9), 생화학 (5)

—新竹尖端工業團地는 輸出加工地域(Export Processing Zones)과 마찬가지로 輸入關稅 및 營業稅·間接稅가 면제되는 동시에, 艱요한 고도기술업체에 대해서 추가적 인센티브를 제공함.

○ 地代減免 : 5년

○ 法人稅減免 : 20% 상한내에서 부과

○ 投資稅額控除 : 15% (4년간 이월허용)

○ 創業資金 필요시 政府(The National Science Committee)의 持分參與(49% 상한)

○ 生産品의 國內市場販賣 허용

### 3. 싱가포르

#### (1) 認許可上의 規制

—싱가폴은 貿易仲介港으로서 外國의 자본과 상품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취지 하에 外國人投資에 대하여 매우 개방적 입장을 취하여 왔음.

○ 이에 따라 外國인 직접투자는 싱가포르 경제전체에 커다란 활력소가 되고 있음. 단적인 예로 50% 이상 外國인 소유 제조업체는 전체 제조업체의 70%, 전체 고용자의 53%를 차지함(1985년 기준).

—外國人投資 禁止業種은 國家獨占인 公共施設, 방송 및 通信事業 등에 국한 됨.

—外國人投資에 대한 持分制限은 銀行 및 金融業과 같은 서비스업종에 일부 존재함.

- 國內銀行 : 40% 상한
- 證券仲介業 : 49% 상한(3년 후 70%까지 증대허용)

—外國人投資企業이 投資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2) 內國民待遇

—外國人投資企業은 內國人企業과 동일한 대우를 받음.

- 전 기업은 기업등기소에 등록을 요함.
- 영업개시전 무역개발위원회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外換規制나 送金制限이 없으며, 國產部品使用이나 技術移轉과 같은 이행조건부과 등의 제약이 존재치 않음.

## (3) 投資인센티브

—싱가폴은 위와 같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정책기조에 따라 인센티브제도 및 하부구조의 정비에 주력하여 왔음.

- 産業高度化라는 목표아래 수출기업, 고부가가치 및 자본집약적 제조업, 서비스분야(예 : 다국적기업의 지역경영본부)에 대한 신규투자, 기존산업의 기술개선 및 자동화, 신상품개발을 통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
- 韓國, 臺灣, 싱가포르의 주요 투자인센티브의 비교는 <表 18> 참조.

-싱가폴 투자인센티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經濟擴張 인센티브법」(The Economic Expansion Incentive Act)은 1980년대 이후 회임기간이 긴 資本集約産業이나 尖端技術産業을 중심으로 인센티브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R&D 투자와 기술훈련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음.

- 5~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여 주는 「開拓資格(pioneer status) 인센티브」는 기존의 기술, 노우하우 및 기능보다 현격한 차이가 있는 신기술사업에 우선적으로 부여됨.
- 開拓資格이 부족하거나 또는 추가적 혜택을 원하는 기업은 기술혁신과 관련된 경우 여타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음. 예를 들면 「投資課標控除 (Investment Allowance)인센티브」는 기술혁신을 위한 신규투자의 경우 投資金額의 30~50% 한도내에서 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함.

-자본집약적 尖端技術産業의 경우, 持分參與나 長期低利融資를 통하여 자금 부담을 경감시켜 줄 목적으로 금융지원을 제공함(Capital Assitance Scheme).

- 공장과 기계시설비용의 50%, 건물비용의 70% 한도내에서 지원함.
- 창업자금의 지원은 국내기업뿐 아니라 상당한 국내과급효과가 예상될 경우 해외투자기업의 경우에도 해당됨.

-R&D 투자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로는 1년미만 단기중심의 「商品開發支援 프로그램」(PDAS)과 보다 중장기적인 「研究開發支援計劃」(RDAS) 등을 통한 금융지원과, 이 밖에 각종 조세지원이 있음.

(i) 金融支援 (주로 싱가포르 국내기업 대상)

- PDAS(The Product Development Assistance Scheme) : 상품개발비용의 과표공제 및 직접개발비의 1:1 대응 무상지원금 지급.

〈表 18〉 韓國, 臺灣, 싱가포르의 主要 投資인센티브 比較

	韓 國	臺 灣	싱 가 포 르
新技術事業의 創業	투자금의 3% 세액공제 또는 30% 일시 상각 (국산기자재는 각각 10% 및 50%)	자본금의 2배까지 社內 留保 허용	新技術 開拓事業의 경 우 5-10년간 법인세 면 제
企業의 技術開發 基金 積立	기업收入의 2% 또는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허용	納入資本의 100%한도 社 內留保 허용(주요 尖端 産業은 200%)	
職業訓練施設	투자금의 3% 세액공제 또는 30%일시상각(국 산기자재는 각각 10% 및 50%)		
研究試驗施設	투자금의 8% 세액공제 (국산기자재는 10%) 또 는 90%의 일시상각	투자금의 2년아내 100% 가속 감가상각	○투자금의 3년아내 100% 가속감가상각 ○투자금액의 50% 과표 공제
技術·人力開發	○당해년도 개발비의 10% 세액공제 ○직전 2년간 평균 비용 초과분의 10% 추가 공제	○ 투자액의 5-20% 세 액공제(4년간 이월가 능) ○ 직전 5년중 최대 액수 초과분의 20% 세액 공제	투자액의 二重課標控除
特許權,實用新案權, 製造秘法	국내이전시 소득세전액 면제, 국외이전시 50% 감면	소득세 전액면제	
벤처캐피탈	株式讓渡差益에 대한 비 과세	고도기술사업이나 벤처 캐피탈회사의 주식을 2 년이상 소유한 경우 주 식발행가의 20%까지 법 인세나 종합소득세면제	손해발생시 투자액의 100% 까지 과표공제

	韓 國	臺 灣	싱가포르
外國人直接投資企業	<p>국내개발이 곤란한 고도기술을 수반하거나, 수출자유지역 입주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세감면: 3년간 100%, 2년간 50%</li> <li>○배당소득세감면: 5년간 50%</li> <li>○재산세·취득세감면: 5년간 50%</li> <li>○해당자본재의 관세·부가가치세 감면: 50%</li> </ul>	<p>첨단공업단지 입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업세, 간접세면제: 5년간</li> <li>○지대면제: 5년간</li> <li>○관세면제</li> <li>○창업자금 필요시 정부(국가과학위원회)의 지분참여: 49% 한도</li> <li>○생산품의 국내판매 허용</li> </ul>	
外國技術移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개발이 곤란한 고도기술의 경우 고도기술수반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한 혜택</li> <li>○로얄티 및 기술지원비 지급액의 법인세 면제</li> </ul>	<p>특정로얄티 및 기술지원비 지급에 대하여 원천징수 면제</p>	<p>로얄티 및 기술지원비 지급, 해외 R&amp;D 지원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p>
外國人技術者 活用	<p>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를 5년간 전액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경영자나 기술자의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의 경우 소득세 면제</li> <li>○외국인투자자에 주식배당금이나 이윤의 20%까지 소득세 면제</li> </ul>	

○RDAS(The Research Development Assistance Scheme) : 전체 연구개발비용의 30~70% 지원. 상품화가 되면 로얄티 형태로 환급함.

## (ii) 租稅支援

- 1년 이상의 개척자격 인센티브(이미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도 가능함.)
- R&D 설비투자의 50% 한도내의 법인세 과표공제
- R&D 비용의 이중과표공제
- R&D 건물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허용
- 제조허가(manufacturing licenses) 획득비용을 5년에 걸쳐 과표공제
- 외국에 대한 로얄티 및 기술지원비 지급 또는 해외 R&D 지원 등에 대하여 전액 또는 50% 한도내의 법인세 감면

—「新技術促進 프로그램」(Initiatives in New Technologies Program)은 인력개발 및 R&D센터 설립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함.

- 처음 3년간 소요되는 인력비용의 90%한도내에서 금융지원

## (4) 技術集約的 産業을 위한 環境改善

—싱가폴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제품개발 및 R&D 활동을 돕기 위하여 적절한 투자환경 마련에 노력함.

- 尖端技術團地(Science Park)설치 : 기업 및 학계간의 공동연구추진을 위한 캠퍼스 조성
- 첨단기술 및 노우하우 도입을 위한 知的所有權 保護 강화 : 영국에 등록된 특허권만을 인정하던 영국법체제에서 벗어나 1991년에는 싱가포르 고유의 특허법 제정

—작업환경을 그대로 갖춘 훈련센터를 설립하여 특정한 하이테크 작업과정별로 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이 부담하는 훈련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

- 국내 또는 해외 기술연수 비용의 30-70% 무상지원(TGS : The Training-Grant Scheme)
- 하급노동자를 주대상으로 하는 기술훈련지원(ECS : The Emerging Critical Skills Scheme)

공공행정부문을 망라하는 전산망을 구축하고 점차적으로 민간기업부문까지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

- 1980년 國家電算化委員會(CNC) 및 국가컴퓨터위원회(NCB) 설립
- 電算專門家 양성 및 企業의 電算教育 인센티브 강화

## IV. 外國人直接投資 活性化方案

### 1. 活性化의 必要性

—外國人直接投資는 外國資本의 단순한 國內流入에 더하여 製造技術, 經營技術 및 專門人力 등 生産要素의 國內移轉을 초래하고 外國人投資家는 企業經營에 直接的으로 參與함으로써, 流入國 經濟에 다양한 影響을 미침. 따라서 外國人直接投資가 一國經濟에 미치는 影響과 必要性에 대한 종합적 評價는 各國이 처한 對內外 經濟環境과 政策目標에 따라 다를 것임.

—우리경제가 추구하고 있는 開放化와 自律化 등 주요 政策課題와 國內外 經濟與件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外國人直接投資는 다음과 같은 必要性에 따라, 향후 技術集約的인 업종을 중심으로 積極 活性化되어 技術發展과 産業構造 高度化에 活用되어야 함.

—첫째, 世界 尖端技術의 급속한 발전과 선진국들의 技術保護主義 趨勢를 감안할 때, 전반적인 技術開發與件이 未備한 우리가 自體開發努力과 技術導入 契約을 통하여 先進國 技術水準을 따라 잡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우리경제의 當面課題인 製造業部門의 技術發展을 위해서는 外國人直接投資를 통하여 先進技術을 習得하고, 技術開發을 위한 國內外企業간 協力과 競爭을 促進해야 함.

—둘째, 外國人直接投資의 流入은 資本-勞動比率과 技術水準을 높여 勞動生産性의 向上과 勞動者의 所得增大에 기여함. 또한 우리경제의 높아진 賃金水準을 고려할 때, 과거와 같이 低賃勞動력을 활용하기 위한 外國人直接投資

의 流入은 거의 期待할 수 없으므로, 外國人直接投資가 國內의 저임노동력을 착취할 것이라는 일부의 견해는 杞憂에 불과함.

—셋째, 세계적인 貿易自由化 추세와 우리경제의 국제적 위상을 감안할 때, 거의 모든 工產品의 輸入開放이 不可避해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는 外國人直接投資의 規制를 통한 消極的 國內産業保護보다는 外國人直接投資의 流入을 통한 外國企業과의 競爭 促進을 통하여 우리 産業의 生産效率과 競爭力을 積極的으로 높여 나가야 함.

—넷째, 經常收支赤字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元利金 償還義務을 지는 借款導入보다는 外國人直接投資의 流入이 國際收支防禦라는 측면에서 유리한 外資調達手段이라 할 수 있음.

—다섯째, 國家間的 經濟的 國境이 희박해지면서 世界 各國이 自國의 經濟的 利益을 위하여 外國人直接投資를 적극적으로 誘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外國人直接投資 誘致에 消極的일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가 크게 감소할 可能性도 있음. 따라서 外國人直接投資가 갖는 長點을 最大限 活用하기 위하여 이를 積極 誘致해야 함.

## 2. 活性化方案

### (1) 國內 巨視經濟環境의 改善

—그간 外國人直接投資 不振의 가장 큰 原因이 賃金 및 地代의 급격한 上昇 등 巨視經濟的 不安定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우선적으로 國內 巨視經濟環境

을 改善하기 위한 政府의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安定化施策이 先行되어야 함.

- 物價安定政策의 지속적 추진으로 賃金の 安定과 勞使關係의 安定
- 資金흐름을 生産部門으로 유도하고 國內金利의 引下를 誘導

一 또한 우리경제의 國際化와 自由化 計劃을 충실히 실행함으로써 國際的 信賴를 제고하는 한편, 外國人投資家가 長期的 비전을 가지고 안정적인 企業活動을 營爲할 수 있는 環境을 마련하여야 함.

## (2) 外國人直接投資制度의 整備

### ① 外國人投資 制限業種 및 制限要件의 緩和

一 외국인투자가 自由化된 製造業種中 타법률에 의하여 制限받는 業種이 다수 존재함. 첨단기술사업일 경우 이러한 제한을 廢止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소기업 고유업종(현재 161개) 및 지정계열화업종(44개 계열 60개 업종)의 타당성을 再檢討
- 外國人投資의 경우에 대하여는 外國 母企業의 中小企業與否에 관계없이 投資를 許容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② 外國人投資 持分制限의 緩和

一 外國人投資 持分率에 대한 制限도 尖端技術事業일 경우는 廢止가 검토되어야 함.

- 中小企業 固有業種 및 指定系列化業種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시 대기업의 경우는 50%미만으로 持分을 制限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100%까지 許

容해야 함.

③ 外國人投資政策의 明瞭性 提高

—外國人投資許可 關聯法規 중, 모호하거나 濫用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明瞭化하여 政策과 制度의 透明性을 提高하여야 함.

- 外資導入法 3조 1항에는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에 나쁜 影響을 미칠 수 있는 경우” 外國人投資를 制限할 수 있도록 規程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濫用의 可能性이 큼.

—외국인투자정책의 重要사항들을 법률이 아닌 정부의 비공개적 행정지침사항에 의하여 규제하는 慣行을 조속히 是正해야 함.

- 中小企業創業支援法은 지원업체가 사업개시후 5년간은 工場敷地를 轉賣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공부 운용지침에서는 投資持分까지 轉賣 禁止 對象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함.

(3) 外國人投資企業의 營業環境 改善

① 優先償還株 발행을 통한 營業資金融通 許容

—국내의 높은 資本費用 및 貸出機會不足을 감안할 때, 外國人 投資企業의 營業자금상의 압박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優先償還株 발행을 통한 增資形式의 자금조달(equity financing)과 차후의 減資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尖端産業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不動產取得 許容

—현재 원칙적으로 제조업에 한정되고 있는 不動產取得 認可를, 서비스업이라도 R&D 센터, 소프트웨어開發 및 技術訓練과 같이 제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경우 伸縮的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③ 技術導入環境의 改善

—技術導入條件에 관한 정부의 지나친 干涉排除

○ 기술도입에 대한 申告制 실시(1991.3)에도 불구하고, 신고수리시 소관부처별로 로알티規模나 라이선스期間 등에 대하여 干涉이 殘存하고 있으나, 이를 조속히 縮小하여야 함.

—技術導入關聯 施設材 輸入時 로알티에 대한 關稅賦課 免除

○ 우리나라의 경우 技術導入에 따른 施設材 및 原資材 輸入에 대한 관세부과시, 해당 로알티에도 關稅가 부과됨으로써 결과적으로 生産原價의 上昇 要因으로 작용함. 따라서 로알티에 대한 關稅賦課의 免除를 적극적으로 檢討하여야 함.

○ 싱가포르의 경우 關稅를 부과하지 않음.

### (4) 尖端工業園地의 設置

—최근 제조업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가 부진한 이유는 높은 賃金水準과 함께 國內 工場用地의 確保難과 地價急騰이 主要原因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尖端技術産業을 중심으로 하는 專用工團 設置가 필요함.

—첨단공업단지는 高級技術人力의 確保, 通信 및 情報서비스 利用可能性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추진중인 首都圈集中 抑制政策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한,

과감한 立地選定이 필요함.

○ 아산만 등 西海岸埋立地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적극 검토할 수 있음.

- (i) 工業用地 確保 容易
- (ii) 社會間接施設 投資費用이 상대적으로 低廉
- (iii) 中國, 北韓 등과의 輸送 容易
- (iv) 大德研究團地내의 연구기관 및 인접 대학과의 協調 용이

— 尖端工業團地 入住業體에 대해서는 工場敷地의 長期賃貸契約을 체결하여 安定的 操業을 돕는 이외에도 追加的 租稅減免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

- (i) 地代의 減免(대만의 경우 5년간 地代의 減免)
- (ii) 高度技術을 수반하는 外國人投資業體에 주고 있는 租稅減免上 惠澤 부여
  - 법인세감면: 3년간 100%, 2년간 50%
  - 배당소득세감면 : 5년간 50%
  - 재산세·취득세 감면 : 5년간 50%
  - 해당 자본재의 관세·부가가치세 감면 : 50%

— 대만의 新竹尖端工業團地 경우 입주업체에 대하여 輸出加工地域(Export Processing Zones)과 마찬가지로 輸入關稅 및 營業稅·間接稅 免除혜택을 부여하며, 긴요한 고도기술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적 인센티브를 제공함.

- 지대감면 : 5년
- 법인세감면 : 20%내에서 低率 적용
- 투자세액공제 : 投資金의 15%(4년간 이월허용)
- 創業資金 필요시 정부(The National Science Committee)의 持分參與(49% 상한)

- 생산품의 國內市場販賣 허용

### (5) 弘報活動의 強化

—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國內 投資與件과 우리경제 전반에 대한 情報을 外國投資家에게 弘報하는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外國人 投資家の 隘路事項을 收斂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公式的 通路의 常設化가 필요함.

#### ① 國內外 外國人投資 弘報活動의 強化

- 海外公館에도 안내자료의 충분한 공급과 相關公무원의 活用
- 民間經濟協議會 등에서의 홍보 강화
- 地方政府도 外國人投資企業 誘致를 위한 데스크 運用

#### ② 外國人投資企業—政府間 協議體 構成

- 미국, EC, 일본 등 주요 외국인투자기업의 隘路事項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外國人投資企業에게 정부의 政策과 關聯制度를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와 경제기획원, 재무부 및 關聯부처의 실무진을 중심으로 協議體를 構成·活用함.

## 〈參考文獻〉

- 經濟企劃院, 「外國人投資 白書」, 1981.
- 金南斗, 「韓美間 直接投資의 構造와 投資環境의 變化」, 정책연구 19-17,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 大韓貿易振興公社, 「중화민국」, 해외시장 국별시리즈, 무공자료 19-16, 1991.
- 財務部, 「外資導入關聯 規程集」, 1991.
- 中小企業振興公團, 「외국인투자관련 세미나」, 1991.
- 柳在元, 「ASEAN 主要國의 貿易産業政策과 投資環境變化」, 정책연구 90-06,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0.
- 日本貿易振興會, 「1991 ジェトロ白書—投資編」, 1991.
- 車東世, 「外資導入의 效果分析」, 産業研究院, 1986.
- Business International, *Investing, Licensing & Trading Conditions Abroad*, 1991.
-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Competing Economies*, 1991.
-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vestment Center, Taiwan, *The Best Place in Asia for Your Investment: Taiwan R.O.C.*, 1991.
- OECD, *Controls and Impediments Affecting Inward Direct Investment in OECD Member Countries*, 1987.
- , *Investment Incentives and Disincentives: Effects on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1989.
- , *Code of Liberalisation of Capital Movements*, 1990.
- UN, *World Investment Report 1991: The Triad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1991.

政策資料 92-03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과 活性化方案

---

---

1992年 3月 9日 初版發行

1993年 12月 15日 2版發行

發行人 金 迪 教

發行處 對 外 經 濟 政 策 研 究 院

서울市江南區大峙3洞942-1番地君子빌딩 14層-18層

電話：528-5555 FAX：528-5511, 5522

登錄：1990年 11月 7日 第 16-375號

印 刷 오름시스템(주) 전화：273-7011

---

---